

# 안산시 공유재산 이관계획 승인(안)

의 안	
번 호	272

제출년월일 : 1994. 6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1. 주 문

- 주택건설사업계획(공영개발사업)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 회계간  
이관하고자함

## 2. 제안사유

- 공한지로 관리중인 균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함  
으로서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회계간에  
유상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고자함

## 3. 주요내용

- 인 수 자 : 안산시장 (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자)  
○ 위 치 : 선부동 978번지  
○ 용 도 지 역 : 일반주거지역  
○ 면 적 : 12,373.2m<sup>2</sup> (3,742.8평)

- 임대아파트 : 5,761.6m<sup>2</sup> (1,742.8평)

- 분양아파트 : 6,611.6m<sup>2</sup> (2,000.0평)

○ 소유자 : 안산시장 (일반회계)

○ 이관 예상액 : 1,282,651천원

- 산출 내역 : 194,000원/m<sup>2</sup> (93공시지가) x 6,611.6m<sup>2</sup> = 1,282,650,400원

\* 예정가격은 추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할 계획임

○ 주택 사업량 : 200세대(25평형아파트) 15층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

#### 4. 주실과 의견

〈 회계과 〉

○ 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(일반회계)를 용도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이관하여 서민아파트를 건립토록 함으로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유재산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

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: 사업추진부서 〉

○ '93. 12. 31일 현재 안산시 주택보급율은 73%에 불과함으로 현재 시유지로 이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택(아파트)을 건립 공급함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5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## ○ 지방재정법

**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제81조(회계간의 재산이관)**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.

## ○ 지방재정법시행령

**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**제87조(용도폐지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
2.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

## ○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

**제3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 ○ 지방공기업법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, 경영하는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이라 한다)과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○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

**제1조(공영개발사업의 설치)**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의 범위)** 이 조례는 적용을 받는 "공영개발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주택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

제10조(출자)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.

## 6. 기타사항

위치도 1부. 끝.

# 위 치 도

